약국 방역지침

·본 지침 예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약국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마련하였습니다.
·약국에서는 본 지침 예시를 참고하여 약국 상황에 적합한 약국별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
2020.6.18

1-1 약국책임자(또는 방역관리자) 대상 권고사항

방역체계 구축 및 대응체계 확립

-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역보건소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고, 대응계획 세우기

약국명: _____ 소재지: _____ 약국책임자명: _____ 방역관리자명: _____

작성일자: _____ ☎보건소: _____

☎선별진료소: 지역번호+120 ☎콜센터: 1339

- 방역관리자는 약국 내 밀집도, 환기상태,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약국 내 방역관리 위험도를 평가하고, 방역지침을 마련하여 실행 및 점검하기(붙임. 약국방역 및 환경소독 확인사항 예시 참조)

증상여부 확인 및 신고

- 약사 및 종업원 중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는 경우 지역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문의하도록 조치하기
- 약사 및 종업원 중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
- 약사 및 종업원 중에서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있거나,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병가·연차휴가·휴직 등을 사용하게 하기
- 약사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 등으로 체온 검사하고,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하기
- 약국 내 2~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~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,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

사람 간 거리두기

- 필요시 작은 창을 통해 약을 투약함으로써 환자 또는 방문자와의 대면을 최소화하기
- 필요시 바닥에 마킹을 하여 약사와 방문자 사이 2m(최소 1m) 이상 간격두기
- 한번에 약국에 들어올 수 있는 방문자 수를 제한하는 등 약국 내 밀집도 증가에 주의하기
- 방문자를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기
- 처방전 접수, 의약품 투약, 계산 시에 트레이 사용하기
- 접수대, 투약 및 판매대 등에는 반드시 필요한 물품들만 놓기
- 필요시 환자 또는 방문자가 직접 상품을 고를 수 있는 제품진열대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며 약사 또는 종업원에 의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

- 침방울이 튀는 행위(기침·재채기, 큰소리로 막하기, 지폐세기 등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주의시키기
- 모니터·책상·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약사 및 종업원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유지하기
- 투약구 앞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게 하기
- 휴게실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
-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
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안내

- 약사 및 종업원에게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되도록 자제시키고,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

환기 및 소독(약국방역, 약국 환경소독 등 참고)

-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약국 내 면적과 인원을 고려하여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
-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(출입구 손잡이 등)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
-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기

약국 내 관련 물품 지급·비치 또는 구입 지원

-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약국 내 상황에 맞게 지급·비치하거나 구입 지원하기
- 약국용 청소·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기
- 필요시 투명 가림막, 바닥에 마킹을 위한 테이프 등을 지급 또는 비치하기

교육 및 홍보

- 약국 방역관리 지침을 약국 내 비치하고, 약사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지침 관련 내용 교육하기
- 손씻기, 손 소독제 사용, 기침예절 등 위생관리방안을 게시 또는 교육하기
- 개인위생수칙 준수,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내 및 협조 요청하기
-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 등 관련 홍보물 부착 및 리플릿 배부 등

*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(www.kcdc.go.kr)에 게시된 자료 활용 가능

1-2 약사 및 종업원 대상 권고사항

증상여부 확인 및 보고

-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지역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(1339 또는 지역번호+120)에 문의하고 출근을 자제하기
- 감염이 의심되거나, 감염자와의 접촉이 의심될 경우(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'확진자 방문 다중이용시설 정보' 확인 후 해당시간대 방문한 경우 등) 즉시 약국책임자(또는 방역관리자)에게 보고하기
-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 등으로 체온 검사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에 협조하기
- 근무 중 발열, 기침 등이 나타나면 약국 책임자(또는 방역관리자)에게 알린 후 마스크 착용하고 퇴근하기

사람 간 거리두기

- 다른 사람과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-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
-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자제하기

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

- 되도록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,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하기
- 소규모 모임, 동아리 활동, 회식 등은 자제하고, 퇴근 후 일찍 귀가하기

교육 참석 및 개인위생·생활수칙 준수

- 약국 내 비치된 약국 방역관리 지침의 사항을 준수하고, 지침 관련 내용 교육에 참석하기
- 방문자를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기
-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
- 침방울이 튀는 행위(기침·재채기, 큰소리로 말하기, 지폐세기 등)나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
- 개인 찻잔·찻숟가락 등 개인소품 사용하기
- 개인위생수칙 준수,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숙지하고, 약국책임자(또는 방역관리자)의 요청사항에 협조하기

환기 및 소독(약국방역, 약국 환경소독 등 참고)

-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,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약국 내 면적과 인원을 고려하여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
-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(출입구 손잡이 등)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

Reference
1)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[제3-1판] (2020.4.2.)
2)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지침(개인방역 및 집단방역)(2020.5.3.)
3)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(2020.6.4.)

[붙임] 약국방역 및 환경소독 확인사항 예시

약국명		소재지			
약국책임자명		약국방역 관리자명			
점검일(년, 월, 일)					
점검자 확인서명					
점검항목(항목별 점검 시 '해당없음(-)', 'O' 또는 'Y'로 표시)					
증상 여부 확인 및 신고	약사 및 종업원 중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는 경우이거나 출근을 중단시키거나 즉시 퇴근 조치하였는가?				
	약사 및 종업원 중에서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 등을 다녀온 경우 병가·연차휴가·휴직 등을 사용하게 하였는가?				
	약사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 등으로 체온 검사하고,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였는가?				
	약국 내 유증상자가 3~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,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였는가?				
사람 간 거리 두기	약국 내 사람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두도록 준수 안내문을 게시하였는가?				
	약국방문자 또는 환자를 직접 응대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약사 및 종업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였는가?				
	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또는 관련 물품을 약국 상황에 맞게 지급·비치하거나 구입을 지원하였는가?				
환기 및 소독	약국 문 또는 창문을 상시 열어두거나,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였는가?				
	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(출입구 손잡이 등)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하였는가?				
	약국 내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을 게시하였는가?				
	약국용 청소·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였는가?				

* 보건소 연락처: _____
* 약국책임자는 약국방역 및 환경소독을 위해 약국 방역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, 방역관리자의 휴가 등으로 부재 시 점검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